유기치사·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사기·유사수신행위의규제 에관한법률위반·방문판매등에관한법률위반

[서울중앙지방법원 2007. 1. 19. 2006고합1291, 2006고합1403(병합), 2006고합1412(병합)]



【전문】

【피고인】 피고인

【검 사】정영학

【변 호 인】 변호사 이관우

【주문】

1

피고인을 징역 4년에 처한다.

이 판결 선고 전의 구금일수 170일을 위 형에 산입한다.

피고인으로부터 4,416,000원을 추징한다.

[이유]

-] 피고인은 2004. 7. 1. 부산지방법원에서 유사수신행위의 규제에 관한 법률위반죄 등으로 징역 8월을 선고받아 같은 해 10. 5. 형의 집행을 종료하고 다단계판매회사인 공소외 4 주식회사의 부사장으로 근무하던 자인바,
- 1. 공소외 5, 공소외 6, 공소외 7, 공소외 8과 공모하여
- 가. 사실은 투자자들로부터 단기로 투자금을 유치하여 디지털즉석사진인화기 '(이름 생략)' 대여사업을 하더라도 후순 위의 투자자들로부터 유치한 투자금을 이용하여 기존의 투자자들에 대한 원리금을 단기간 내에 순차적으로 상환하는 방식을 취할 수 밖에 없어 결국 계속적으로 새로운 투자자가 유치되지 아니하는 이상 약정된 고율의 수익금을 지급하지 못할 것이 예상되는 등 투자원리금 상환을 위한 금전적 기반이 극히 취약하여 투자자들에게 약정된 고율의 수익금을 지급하여 줄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2005. 7. 30.경 서울 관악구 봉천 10동 (이하 생략) 대영 오피스텔 4층에 있는 ○○○○ 사무실에서 피해자 공소외 9에게 "디지털즉석사진인화기 (이름 생략)의 대여사업을 하고 있는데 1구좌에 120만 원씩 투자하면 구좌마다 매주 50,000원에서 많게는 80,000원씩 24주간 180만 원을 지급하여 주겠다"고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 공소외 9로부터 120만 원을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같은 해 6. 28.경부터 같은 해 11. 19.경까지 사이에 같은 방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피해자 83명으로부터 투자금 명목으로 합계 1,060,106,200원 상당을 송금받아 이를 각 편취하고,
- 나. 누구든지 인가 등을 받지 아니하거나 등록 등을 하지 아니하고 장래에 출자금의 전액 또는 이를 초과하는 금액을 지급할 것을 약정하고 출자금을 수입하는 유사수신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됨에도 불구하고 위 가.항과 같이 투자를 권유하여 합계 1,060,106,200원 상당을 송금받음으로써 유사수신행위를 하고,

다.

- 다단계판매원이 되고자 하는 자에게 가입비 등 형태 여하를 불문하고 금품을 징수하는 등 의무를 부과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됨에도 불구하고, 2005. 6.경 위 같은 장소에서 피해자 공소외 10을 공소외 4 주식회사의 다단계판매원으로 등록시키면서 120만 원을 징수하여 의무를 부과하는 행위를 하고,
- 2. 마약류 취급자가 아님에도,

법제처 1 국가법령정보센터

- 가. 2005. 4. 중순경 부산 수영구 광안리 소재 광안리해수욕장 부근 노상에서 공소외 3으로부터 향정신성의약품인 메스 암페타민(이하 '필로폰'이라 한다) 약 0.3g을 30만 원에 매수하고,
- 나. 같은 해 7. 하순경 같은 장소에서 공소외 3으로부터 필로폰 약 0.3g을 30만 원에 매수하고, 다.
- 같은 해 12.20.경 공소외 3의 국민은행계좌로 필로폰 구입대금 50만 원을 계좌이체 송금한 후 같은 달 21. 23시경 서울 관악구 봉천10동 (이하 생략) 소재 대영오피스텔 702호실에서 공소외 3으로부터 필로폰 약 2g을 건네받아 이를 매수하고,
- 라. 2006. 3. 19. 공소외 3의 국민은행 계좌로 필로폰 구입대금 30만 원을 계좌이체 송금한 후 같은 달 20. 23시경 서울 서초구 반포동 소재 ◇◇모텔 3층 호실 불상 방안에서 공소외 3으로부터 필로폰 약 0.1g을 건네받아 이를 매수하고
- 마. 같은 달 21. 새벽 무렵 서울 관악구 봉천동 소재 상호불상 모텔 호실 불상 방안에서 위와 같이 매수한 필로폰 중 약 0.05g을 1회용 주사기에 넣고 생수와 희석한 후 피고인의 왼팔에 주사하여 이를 투약하고,
- 바. 같은 날 12시경 같은 장소에서 같은 방법으로 필로폰 약 0.05g을 투약하고,
- 사. 같은 달 22.경 공소외 3의 국민은행 계좌로 필로폰 구입대금 30만 원을 계좌이체 송금한 후 같은 달 23. 새벽 무렵 위 ◇◇모텔 호실 불상 방안에서 공소외 3으로부터 필로폰 약 0.1g을 건네받아 이를 매수하고,
- 아. 같은 해 7. 17.경 공소외 11에게 불상의 계좌로 필로폰 구입대금 50만 원을 무통장입금한 후 같은 달 24. 22시경 부산 해운대구 소재 해운대해수욕장 부근 노상에서 공소외 11로부터 필로폰 약 2g을 건네받아 이를 매수하고,
- 자. 공소외 1과 공모하여,
- (1) 같은 달 26. 15시경 서울 서초구 서초동 소재 상호 불상 모텔 호실 불상 방안에서 피고인이 위 1의 아.항과 같이 매수한 필로폰 중 약 0.03g을 1회용 주사기에 넣고 생수와 희석하여 공소외 1의 손등에 주사해 주고 필로폰 약 0.05g을 1회용 주사기에 넣고 생수와 희석한 뒤 피고인의 팔에 주사하여 이를 각 투약하고,
- (2) 같은 달 27. 18시경 같은 동 소재 △모텔 호실 불상 방안에서 같은 방법으로 공소외 1은 필로폰 약 0.03g, 피고인은 필로폰 약 0.05g을 각 투약하고,
- (3) 같은 달 29. 1시경 같은 장소에서 같은 방법으로 공소외 1은 필로폰 약 0.03g, 피고인은 필로폰 약 0.05g을 각 투약하고.
- (4) 같은 달 30. 15시경 같은 동 소재 □□□모텔 701호실에서 같은 방법으로 공소외 1은 필로폰 약 0.03g, 피고인은 필로폰 약 0.05g을 각 투약하고,
- (5) 같은 달 31. 16시경 위 모텔 601호실에서 같은 방법으로 공소외 1은 필로폰 약 0.03g, 피고인은 필로폰 약 0.05g을 각 투약하고,
- 차. 2006. 8. 1. 16시경 같은 장소에서 필로폰 약 0.05g을 1회용 주사기에 넣고 생수와 희석한 후 피고인의 팔에 주사하여 이를 투약하고,
- 카. 공소외 3과 공모하여,
- 2006. 3. 23. 새벽 무렵 ◇◇모텔 호실 불상 방안에서, 피고인이 위 2의 사.항과 같이 매수한 필로폰 약 0.1g을 1회용 주사기 2개에 약 0.05g씩 넣고 생수와 희석한 다음 각자의 팔에 주사하여 이를 각 투약하고,

법제처 2 국가법령정보센터

[이유]

다.

-] 피고인은 2004. 7. 1. 부산지방법원에서 유사수신행위의 규제에 관한 법률위반죄 등으로 징역 8월을 선고받아 같은 해 10. 5. 형의 집행을 종료하고 다단계판매회사인 공소외 4 주식회사의 부사장으로 근무하던 자인바,
- 1. 공소외 5, 공소외 6, 공소외 7, 공소외 8과 공모하여
- 가. 사실은 투자자들로부터 단기로 투자금을 유치하여 디지털즉석사진인화기 '(이름 생략)' 대여사업을 하더라도 후순위의 투자자들로부터 유치한 투자금을 이용하여 기존의 투자자들에 대한 원리금을 단기간 내에 순차적으로 상환하는 방식을 취할 수 밖에 없어 결국 계속적으로 새로운 투자자가 유치되지 아니하는 이상 약정된 고율의 수익금을 지급하지 못할 것이 예상되는 등 투자원리금 상환을 위한 금전적 기반이 극히 취약하여 투자자들에게 약정된 고율의 수익금을 지급하여 줄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2005. 7. 30.경 서울 관악구 봉천 10동 (이하 생략) 대영오피스텔 4층에 있는 ○○○○ 사무실에서 피해자 공소외 9에게 "디지털즉석사진인화기 (이름 생략)의 대여사업을하고 있는데 1구좌에 120만 원씩 투자하면 구좌마다 매주 50,000원에서 많게는 80,000원씩 24주간 180만 원을 지급하여 주겠다"고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 공소외 9로부터 120만 원을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같은 해 6. 28.경부터 같은 해 11. 19.경까지 사이에 같은 방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피해자 83명으로부터 투자금명목으로 합계 1,060,106,200원 상당을 송금받아 이를 각 편취하고,
- 나. 누구든지 인가 등을 받지 아니하거나 등록 등을 하지 아니하고 장래에 출자금의 전액 또는 이를 초과하는 금액을 지급할 것을 약정하고 출자금을 수입하는 유사수신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됨에도 불구하고 위 가.항과 같이 투자를 권유하여 합계 1,060,106,200원 상당을 송금받음으로써 유사수신행위를 하고,
- 다단계판매원이 되고자 하는 자에게 가입비 등 형태 여하를 불문하고 금품을 징수하는 등 의무를 부과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됨에도 불구하고, 2005. 6.경 위 같은 장소에서 피해자 공소외 10을 공소외 4 주식회사의 다단계판매원으로 등록시키면서 120만 원을 징수하여 의무를 부과하는 행위를 하고,

법제처 3 국가법령정보센터

- 2. 마약류 취급자가 아님에도,
- 가. 2005. 4. 중순경 부산 수영구 광안리 소재 광안리해수욕장 부근 노상에서 공소외 3으로부터 향정신성의약품인 메스 암페타민(이하 '필로폰'이라 한다) 약 0.3q을 30만 원에 매수하고,
- 나. 같은 해 7. 하순경 같은 장소에서 공소외 3으로부터 필로폰 약 0.3g을 30만 원에 매수하고, 다.
- 같은 해 12.20.경 공소외 3의 국민은행계좌로 필로폰 구입대금 50만 원을 계좌이체 송금한 후 같은 달 21. 23시경 서울 관악구 봉천10동 (이하 생략) 소재 대영오피스텔 702호실에서 공소외 3으로부터 필로폰 약 2g을 건네받아 이를 매수하고,
- 라. 2006. 3. 19. 공소외 3의 국민은행 계좌로 필로폰 구입대금 30만 원을 계좌이체 송금한 후 같은 달 20. 23시경 서울 서초구 반포동 소재 ◇◇모텔 3층 호실 불상 방안에서 공소외 3으로부터 필로폰 약 0.1g을 건네받아 이를 매수하고
- 마. 같은 달 21. 새벽 무렵 서울 관악구 봉천동 소재 상호불상 모텔 호실 불상 방안에서 위와 같이 매수한 필로폰 중 약 0.05g을 1회용 주사기에 넣고 생수와 희석한 후 피고인의 왼팔에 주사하여 이를 투약하고,
- 바. 같은 날 12시경 같은 장소에서 같은 방법으로 필로폰 약 0.05g을 투약하고,
- 사. 같은 달 22.경 공소외 3의 국민은행 계좌로 필로폰 구입대금 30만 원을 계좌이체 송금한 후 같은 달 23. 새벽 무렵 위 ◇◇모텔 호실 불상 방안에서 공소외 3으로부터 필로폰 약 0.1g을 건네받아 이를 매수하고,
- 아. 같은 해 7. 17.경 공소외 11에게 불상의 계좌로 필로폰 구입대금 50만 원을 무통장입금한 후 같은 달 24. 22시경 부산 해운대구 소재 해운대해수욕장 부근 노상에서 공소외 11로부터 필로폰 약 2g을 건네받아 이를 매수하고,
- 자. 공소외 1과 공모하여,
- (1) 같은 달 26. 15시경 서울 서초구 서초동 소재 상호 불상 모텔 호실 불상 방안에서 피고인이 위 1의 아.항과 같이 매수한 필로폰 중 약 0.03g을 1회용 주사기에 넣고 생수와 희석하여 공소외 1의 손등에 주사해 주고 필로폰 약 0.05g을 1회용 주사기에 넣고 생수와 희석한 뒤 피고인의 팔에 주사하여 이를 각 투약하고,
- (2) 같은 달 27. 18시경 같은 동 소재 △모텔 호실 불상 방안에서 같은 방법으로 공소외 1은 필로폰 약 0.03g, 피고인은 필로폰 약 0.05g을 각 투약하고,
- (3) 같은 달 29. 1시경 같은 장소에서 같은 방법으로 공소외 1은 필로폰 약 0.03g, 피고인은 필로폰 약 0.05g을 각 투약하고.
- (4) 같은 달 30. 15시경 같은 동 소재 □□□모텔 701호실에서 같은 방법으로 공소외 1은 필로폰 약 0.03g, 피고인은 필로폰 약 0.05g을 각 투약하고,
- (5) 같은 달 31. 16시경 위 모텔 601호실에서 같은 방법으로 공소외 1은 필로폰 약 0.03g, 피고인은 필로폰 약 0.05g을 각 투약하고,
- 차. 2006. 8. 1. 16시경 같은 장소에서 필로폰 약 0.05g을 1회용 주사기에 넣고 생수와 희석한 후 피고인의 팔에 주사하여 이를 투약하고,
- 카. 공소외 3과 공모하여,
- 2006. 3. 23. 새벽 무렵 ◇◇모텔 호실 불상 방안에서, 피고인이 위 2의 사.항과 같이 매수한 필로폰 약 0.1g을 1회용 주사기 2개에 약 0.05g씩 넣고 생수와 희석한 다음 각자의 팔에 주사하여 이를 각 투약하고,

법제처 4 국가법령정보센터

[이유]

다.

-] 피고인은 2004. 7. 1. 부산지방법원에서 유사수신행위의 규제에 관한 법률위반죄 등으로 징역 8월을 선고받아 같은 해 10. 5. 형의 집행을 종료하고 다단계판매회사인 공소외 4 주식회사의 부사장으로 근무하던 자인바,
- 1. 공소외 5, 공소외 6, 공소외 7, 공소외 8과 공모하여
- 가. 사실은 투자자들로부터 단기로 투자금을 유치하여 디지털즉석사진인화기 '(이름 생략)' 대여사업을 하더라도 후순위의 투자자들로부터 유치한 투자금을 이용하여 기존의 투자자들에 대한 원리금을 단기간 내에 순차적으로 상환하는 방식을 취할 수 밖에 없어 결국 계속적으로 새로운 투자자가 유치되지 아니하는 이상 약정된 고율의 수익금을 지급하지 못할 것이 예상되는 등 투자원리금 상환을 위한 금전적 기반이 극히 취약하여 투자자들에게 약정된 고율의 수익금을 지급하여 줄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2005. 7. 30.경 서울 관악구 봉천 10동 (이하 생략) 대영오피스텔 4층에 있는 ○○○○ 사무실에서 피해자 공소외 9에게 "디지털즉석사진인화기 (이름 생략)의 대여사업을하고 있는데 1구좌에 120만 원씩 투자하면 구좌마다 매주 50,000원에서 많게는 80,000원씩 24주간 180만 원을 지급하여 주겠다"고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 공소외 9로부터 120만 원을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같은 해 6. 28.경부터 같은 해 11. 19.경까지 사이에 같은 방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피해자 83명으로부터 투자금명목으로 합계 1,060,106,200원 상당을 송금받아 이를 각 편취하고,
- 나. 누구든지 인가 등을 받지 아니하거나 등록 등을 하지 아니하고 장래에 출자금의 전액 또는 이를 초과하는 금액을 지급할 것을 약정하고 출자금을 수입하는 유사수신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됨에도 불구하고 위 가.항과 같이 투자를 권유하여 합계 1,060,106,200원 상당을 송금받음으로써 유사수신행위를 하고,
- 다단계판매원이 되고자 하는 자에게 가입비 등 형태 여하를 불문하고 금품을 징수하는 등 의무를 부과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됨에도 불구하고, 2005. 6.경 위 같은 장소에서 피해자 공소외 10을 공소외 4 주식회사의 다단계판매원으로 등록시키면서 120만 원을 징수하여 의무를 부과하는 행위를 하고,

법제처 5 국가법령정보센터

- 2. 마약류 취급자가 아님에도,
- 가. 2005. 4. 중순경 부산 수영구 광안리 소재 광안리해수욕장 부근 노상에서 공소외 3으로부터 향정신성의약품인 메스 암페타민(이하 '필로폰'이라 한다) 약 0.3g을 30만 원에 매수하고,
- 나. 같은 해 7. 하순경 같은 장소에서 공소외 3으로부터 필로폰 약 0.3g을 30만 원에 매수하고, 다.
- 같은 해 12.20.경 공소외 3의 국민은행계좌로 필로폰 구입대금 50만 원을 계좌이체 송금한 후 같은 달 21. 23시경 서울 관악구 봉천10동 (이하 생략) 소재 대영오피스텔 702호실에서 공소외 3으로부터 필로폰 약 2g을 건네받아 이를 매수하고,
- 라. 2006. 3. 19. 공소외 3의 국민은행 계좌로 필로폰 구입대금 30만 원을 계좌이체 송금한 후 같은 달 20. 23시경 서울 서초구 반포동 소재 ◇◇모텔 3층 호실 불상 방안에서 공소외 3으로부터 필로폰 약 0.1g을 건네받아 이를 매수하고
- 마. 같은 달 21. 새벽 무렵 서울 관악구 봉천동 소재 상호불상 모텔 호실 불상 방안에서 위와 같이 매수한 필로폰 중 약 0.05g을 1회용 주사기에 넣고 생수와 희석한 후 피고인의 왼팔에 주사하여 이를 투약하고,
- 바. 같은 날 12시경 같은 장소에서 같은 방법으로 필로폰 약 0.05g을 투약하고,
- 사. 같은 달 22.경 공소외 3의 국민은행 계좌로 필로폰 구입대금 30만 원을 계좌이체 송금한 후 같은 달 23. 새벽 무렵 위 ◇◇모텔 호실 불상 방안에서 공소외 3으로부터 필로폰 약 0.1g을 건네받아 이를 매수하고,
- 아. 같은 해 7. 17.경 공소외 11에게 불상의 계좌로 필로폰 구입대금 50만 원을 무통장입금한 후 같은 달 24. 22시경 부산 해운대구 소재 해운대해수욕장 부근 노상에서 공소외 11로부터 필로폰 약 2g을 건네받아 이를 매수하고,
- 자. 공소외 1과 공모하여,
- (1) 같은 달 26. 15시경 서울 서초구 서초동 소재 상호 불상 모텔 호실 불상 방안에서 피고인이 위 1의 아.항과 같이 매수한 필로폰 중 약 0.03g을 1회용 주사기에 넣고 생수와 희석하여 공소외 1의 손등에 주사해 주고 필로폰 약 0.05g을 1회용 주사기에 넣고 생수와 희석한 뒤 피고인의 팔에 주사하여 이를 각 투약하고,
- (2) 같은 달 27. 18시경 같은 동 소재 △모텔 호실 불상 방안에서 같은 방법으로 공소외 1은 필로폰 약 0.03g, 피고인은 필로폰 약 0.05g을 각 투약하고,
- (3) 같은 달 29. 1시경 같은 장소에서 같은 방법으로 공소외 1은 필로폰 약 0.03g, 피고인은 필로폰 약 0.05g을 각 투약하고.
- (4) 같은 달 30. 15시경 같은 동 소재 □□□모텔 701호실에서 같은 방법으로 공소외 1은 필로폰 약 0.03g, 피고인은 필 로폰 약 0.05g을 각 투약하고,
- (5) 같은 달 31. 16시경 위 모텔 601호실에서 같은 방법으로 공소외 1은 필로폰 약 0.03g, 피고인은 필로폰 약 0.05g을 각 투약하고,
- 차. 2006. 8. 1. 16시경 같은 장소에서 필로폰 약 0.05g을 1회용 주사기에 넣고 생수와 희석한 후 피고인의 팔에 주사하여 이를 투약하고,
- 카. 공소외 3과 공모하여,
- 2006. 3. 23. 새벽 무렵 ◇◇모텔 호실 불상 방안에서, 피고인이 위 2의 사.항과 같이 매수한 필로폰 약 0.1g을 1회용 주사기 2개에 약 0.05g씩 넣고 생수와 희석한 다음 각자의 팔에 주사하여 이를 각 투약하고,

법제처 6 국가법령정보센터

[이유]

다.

-] 피고인은 2004. 7. 1. 부산지방법원에서 유사수신행위의 규제에 관한 법률위반죄 등으로 징역 8월을 선고받아 같은 해 10. 5. 형의 집행을 종료하고 다단계판매회사인 공소외 4 주식회사의 부사장으로 근무하던 자인바,
- 1. 공소외 5, 공소외 6, 공소외 7, 공소외 8과 공모하여
- 가. 사실은 투자자들로부터 단기로 투자금을 유치하여 디지털즉석사진인화기 '(이름 생략)' 대여사업을 하더라도 후순위의 투자자들로부터 유치한 투자금을 이용하여 기존의 투자자들에 대한 원리금을 단기간 내에 순차적으로 상환하는 방식을 취할 수 밖에 없어 결국 계속적으로 새로운 투자자가 유치되지 아니하는 이상 약정된 고율의 수익금을 지급하지 못할 것이 예상되는 등 투자원리금 상환을 위한 금전적 기반이 극히 취약하여 투자자들에게 약정된 고율의 수익금을 지급하여 줄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2005. 7. 30.경 서울 관악구 봉천 10동 (이하 생략) 대영오피스텔 4층에 있는 ○○○○ 사무실에서 피해자 공소외 9에게 "디지털즉석사진인화기 (이름 생략)의 대여사업을하고 있는데 1구좌에 120만 원씩 투자하면 구좌마다 매주 50,000원에서 많게는 80,000원씩 24주간 180만 원을 지급하여 주겠다"고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 공소외 9로부터 120만 원을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같은 해 6. 28.경부터 같은 해 11. 19.경까지 사이에 같은 방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피해자 83명으로부터 투자금명목으로 합계 1,060,106,200원 상당을 송금받아 이를 각 편취하고,
- 나. 누구든지 인가 등을 받지 아니하거나 등록 등을 하지 아니하고 장래에 출자금의 전액 또는 이를 초과하는 금액을 지급할 것을 약정하고 출자금을 수입하는 유사수신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됨에도 불구하고 위 가.항과 같이 투자를 권유하여 합계 1,060,106,200원 상당을 송금받음으로써 유사수신행위를 하고,
- 다단계판매원이 되고자 하는 자에게 가입비 등 형태 여하를 불문하고 금품을 징수하는 등 의무를 부과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됨에도 불구하고, 2005. 6.경 위 같은 장소에서 피해자 공소외 10을 공소외 4 주식회사의 다단계판매원으로 등록시키면서 120만 원을 징수하여 의무를 부과하는 행위를 하고,

법제처 7 국가법령정보센터

- 2. 마약류 취급자가 아님에도,
- 가. 2005. 4. 중순경 부산 수영구 광안리 소재 광안리해수욕장 부근 노상에서 공소외 3으로부터 향정신성의약품인 메스 암페타민(이하 '필로폰'이라 한다) 약 0.3q을 30만 원에 매수하고,
- 나. 같은 해 7. 하순경 같은 장소에서 공소외 3으로부터 필로폰 약 0.3g을 30만 원에 매수하고, 다.
- 같은 해 12.20.경 공소외 3의 국민은행계좌로 필로폰 구입대금 50만 원을 계좌이체 송금한 후 같은 달 21. 23시경 서울 관악구 봉천10동 (이하 생략) 소재 대영오피스텔 702호실에서 공소외 3으로부터 필로폰 약 2g을 건네받아 이를 매수하고,
- 라. 2006. 3. 19. 공소외 3의 국민은행 계좌로 필로폰 구입대금 30만 원을 계좌이체 송금한 후 같은 달 20. 23시경 서울 서초구 반포동 소재 ◇◇모텔 3층 호실 불상 방안에서 공소외 3으로부터 필로폰 약 0.1g을 건네받아 이를 매수하고
- 마. 같은 달 21. 새벽 무렵 서울 관악구 봉천동 소재 상호불상 모텔 호실 불상 방안에서 위와 같이 매수한 필로폰 중 약 0.05g을 1회용 주사기에 넣고 생수와 희석한 후 피고인의 왼팔에 주사하여 이를 투약하고,
- 바. 같은 날 12시경 같은 장소에서 같은 방법으로 필로폰 약 0.05g을 투약하고,
- 사. 같은 달 22.경 공소외 3의 국민은행 계좌로 필로폰 구입대금 30만 원을 계좌이체 송금한 후 같은 달 23. 새벽 무렵 위 ◇◇모텔 호실 불상 방안에서 공소외 3으로부터 필로폰 약 0.1g을 건네받아 이를 매수하고,
- 아. 같은 해 7. 17.경 공소외 11에게 불상의 계좌로 필로폰 구입대금 50만 원을 무통장입금한 후 같은 달 24. 22시경 부산 해운대구 소재 해운대해수욕장 부근 노상에서 공소외 11로부터 필로폰 약 2g을 건네받아 이를 매수하고,
- 자. 공소외 1과 공모하여,
- (1) 같은 달 26. 15시경 서울 서초구 서초동 소재 상호 불상 모텔 호실 불상 방안에서 피고인이 위 1의 아.항과 같이 매수한 필로폰 중 약 0.03g을 1회용 주사기에 넣고 생수와 희석하여 공소외 1의 손등에 주사해 주고 필로폰 약 0.05g을 1회용 주사기에 넣고 생수와 희석한 뒤 피고인의 팔에 주사하여 이를 각 투약하고,
- (2) 같은 달 27. 18시경 같은 동 소재 △모텔 호실 불상 방안에서 같은 방법으로 공소외 1은 필로폰 약 0.03g, 피고인은 필로폰 약 0.05g을 각 투약하고,
- (3) 같은 달 29. 1시경 같은 장소에서 같은 방법으로 공소외 1은 필로폰 약 0.03g, 피고인은 필로폰 약 0.05g을 각 투약하고.
- (4) 같은 달 30. 15시경 같은 동 소재 □□□모텔 701호실에서 같은 방법으로 공소외 1은 필로폰 약 0.03g, 피고인은 필 로폰 약 0.05g을 각 투약하고,
- (5) 같은 달 31. 16시경 위 모텔 601호실에서 같은 방법으로 공소외 1은 필로폰 약 0.03g, 피고인은 필로폰 약 0.05g을 각 투약하고,
- 차. 2006. 8. 1. 16시경 같은 장소에서 필로폰 약 0.05g을 1회용 주사기에 넣고 생수와 희석한 후 피고인의 팔에 주사하여 이를 투약하고,
- 카. 공소외 3과 공모하여,
- 2006. 3. 23. 새벽 무렵 ◇◇모텔 호실 불상 방안에서, 피고인이 위 2의 사.항과 같이 매수한 필로폰 약 0.1g을 1회용 주사기 2개에 약 0.05g씩 넣고 생수와 희석한 다음 각자의 팔에 주사하여 이를 각 투약하고,

법제처 8 국가법령정보센터

[이유]

다.

-] 피고인은 2004. 7. 1. 부산지방법원에서 유사수신행위의 규제에 관한 법률위반죄 등으로 징역 8월을 선고받아 같은 해 10. 5. 형의 집행을 종료하고 다단계판매회사인 공소외 4 주식회사의 부사장으로 근무하던 자인바,
- 1. 공소외 5, 공소외 6, 공소외 7, 공소외 8과 공모하여
- 가. 사실은 투자자들로부터 단기로 투자금을 유치하여 디지털즉석사진인화기 '(이름 생략)' 대여사업을 하더라도 후순위의 투자자들로부터 유치한 투자금을 이용하여 기존의 투자자들에 대한 원리금을 단기간 내에 순차적으로 상환하는 방식을 취할 수 밖에 없어 결국 계속적으로 새로운 투자자가 유치되지 아니하는 이상 약정된 고율의 수익금을 지급하지 못할 것이 예상되는 등 투자원리금 상환을 위한 금전적 기반이 극히 취약하여 투자자들에게 약정된 고율의 수익금을 지급하여 줄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2005. 7. 30.경 서울 관악구 봉천 10동 (이하 생략) 대영오피스텔 4층에 있는 ○○○○ 사무실에서 피해자 공소외 9에게 "디지털즉석사진인화기 (이름 생략)의 대여사업을하고 있는데 1구좌에 120만 원씩 투자하면 구좌마다 매주 50,000원에서 많게는 80,000원씩 24주간 180만 원을 지급하여 주겠다"고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 공소외 9로부터 120만 원을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같은 해 6. 28.경부터 같은 해 11. 19.경까지 사이에 같은 방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피해자 83명으로부터 투자금명목으로 합계 1,060,106,200원 상당을 송금받아 이를 각 편취하고,
- 나. 누구든지 인가 등을 받지 아니하거나 등록 등을 하지 아니하고 장래에 출자금의 전액 또는 이를 초과하는 금액을 지급할 것을 약정하고 출자금을 수입하는 유사수신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됨에도 불구하고 위 가.항과 같이 투자를 권유하여 합계 1,060,106,200원 상당을 송금받음으로써 유사수신행위를 하고,
- 다단계판매원이 되고자 하는 자에게 가입비 등 형태 여하를 불문하고 금품을 징수하는 등 의무를 부과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됨에도 불구하고, 2005. 6.경 위 같은 장소에서 피해자 공소외 10을 공소외 4 주식회사의 다단계판매원으로 등록시키면서 120만 원을 징수하여 의무를 부과하는 행위를 하고,

법제처 9 국가법령정보센터

- 2. 마약류 취급자가 아님에도,
- 가. 2005. 4. 중순경 부산 수영구 광안리 소재 광안리해수욕장 부근 노상에서 공소외 3으로부터 향정신성의약품인 메스 암페타민(이하 '필로폰'이라 한다) 약 0.3g을 30만 원에 매수하고,
- 나. 같은 해 7. 하순경 같은 장소에서 공소외 3으로부터 필로폰 약 0.3g을 30만 원에 매수하고, 다.
- 같은 해 12.20.경 공소외 3의 국민은행계좌로 필로폰 구입대금 50만 원을 계좌이체 송금한 후 같은 달 21. 23시경 서울 관악구 봉천10동 (이하 생략) 소재 대영오피스텔 702호실에서 공소외 3으로부터 필로폰 약 2g을 건네받아 이를 매수하고,
- 라. 2006. 3. 19. 공소외 3의 국민은행 계좌로 필로폰 구입대금 30만 원을 계좌이체 송금한 후 같은 달 20. 23시경 서울 서초구 반포동 소재 ◇◇모텔 3층 호실 불상 방안에서 공소외 3으로부터 필로폰 약 0.1g을 건네받아 이를 매수하고
- 마. 같은 달 21. 새벽 무렵 서울 관악구 봉천동 소재 상호불상 모텔 호실 불상 방안에서 위와 같이 매수한 필로폰 중 약 0.05g을 1회용 주사기에 넣고 생수와 희석한 후 피고인의 왼팔에 주사하여 이를 투약하고,
- 바. 같은 날 12시경 같은 장소에서 같은 방법으로 필로폰 약 0.05g을 투약하고,
- 사. 같은 달 22.경 공소외 3의 국민은행 계좌로 필로폰 구입대금 30만 원을 계좌이체 송금한 후 같은 달 23. 새벽 무렵 위 ◇◇모텔 호실 불상 방안에서 공소외 3으로부터 필로폰 약 0.1g을 건네받아 이를 매수하고,
- 아. 같은 해 7. 17.경 공소외 11에게 불상의 계좌로 필로폰 구입대금 50만 원을 무통장입금한 후 같은 달 24. 22시경 부산 해운대구 소재 해운대해수욕장 부근 노상에서 공소외 11로부터 필로폰 약 2g을 건네받아 이를 매수하고,
- 자. 공소외 1과 공모하여,
- (1) 같은 달 26. 15시경 서울 서초구 서초동 소재 상호 불상 모텔 호실 불상 방안에서 피고인이 위 1의 아.항과 같이 매수한 필로폰 중 약 0.03g을 1회용 주사기에 넣고 생수와 희석하여 공소외 1의 손등에 주사해 주고 필로폰 약 0.05g을 1회용 주사기에 넣고 생수와 희석한 뒤 피고인의 팔에 주사하여 이를 각 투약하고,
- (2) 같은 달 27. 18시경 같은 동 소재 △모텔 호실 불상 방안에서 같은 방법으로 공소외 1은 필로폰 약 0.03g, 피고인은 필로폰 약 0.05g을 각 투약하고,
- (3) 같은 달 29. 1시경 같은 장소에서 같은 방법으로 공소외 1은 필로폰 약 0.03g, 피고인은 필로폰 약 0.05g을 각 투약하고.
- (4) 같은 달 30. 15시경 같은 동 소재 □□□모텔 701호실에서 같은 방법으로 공소외 1은 필로폰 약 0.03g, 피고인은 필 로폰 약 0.05g을 각 투약하고,
- (5) 같은 달 31. 16시경 위 모텔 601호실에서 같은 방법으로 공소외 1은 필로폰 약 0.03g, 피고인은 필로폰 약 0.05g을 각 투약하고,
- 차. 2006. 8. 1. 16시경 같은 장소에서 필로폰 약 0.05g을 1회용 주사기에 넣고 생수와 희석한 후 피고인의 팔에 주사하여 이를 투약하고,
- 카. 공소외 3과 공모하여,
- 2006. 3. 23. 새벽 무렵 ◇◇모텔 호실 불상 방안에서, 피고인이 위 2의 사.항과 같이 매수한 필로폰 약 0.1g을 1회용 주사기 2개에 약 0.05g씩 넣고 생수와 희석한 다음 각자의 팔에 주사하여 이를 각 투약하고,

법제처 10 국가법령정보센터

[이유]

다.

-] 피고인은 2004. 7. 1. 부산지방법원에서 유사수신행위의 규제에 관한 법률위반죄 등으로 징역 8월을 선고받아 같은 해 10. 5. 형의 집행을 종료하고 다단계판매회사인 공소외 4 주식회사의 부사장으로 근무하던 자인바,
- 1. 공소외 5, 공소외 6, 공소외 7, 공소외 8과 공모하여
- 가. 사실은 투자자들로부터 단기로 투자금을 유치하여 디지털즉석사진인화기 '(이름 생략)' 대여사업을 하더라도 후순위의 투자자들로부터 유치한 투자금을 이용하여 기존의 투자자들에 대한 원리금을 단기간 내에 순차적으로 상환하는 방식을 취할 수 밖에 없어 결국 계속적으로 새로운 투자자가 유치되지 아니하는 이상 약정된 고율의 수익금을 지급하지 못할 것이 예상되는 등 투자원리금 상환을 위한 금전적 기반이 극히 취약하여 투자자들에게 약정된 고율의 수익금을 지급하여 줄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2005. 7. 30.경 서울 관악구 봉천 10동 (이하 생략) 대영오피스텔 4층에 있는 ○○○○ 사무실에서 피해자 공소외 9에게 "디지털즉석사진인화기 (이름 생략)의 대여사업을하고 있는데 1구좌에 120만 원씩 투자하면 구좌마다 매주 50,000원에서 많게는 80,000원씩 24주간 180만 원을 지급하여 주겠다"고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 공소외 9로부터 120만 원을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같은 해 6. 28.경부터 같은 해 11. 19.경까지 사이에 같은 방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피해자 83명으로부터 투자금명목으로 합계 1,060,106,200원 상당을 송금받아 이를 각 편취하고,
- 나. 누구든지 인가 등을 받지 아니하거나 등록 등을 하지 아니하고 장래에 출자금의 전액 또는 이를 초과하는 금액을 지급할 것을 약정하고 출자금을 수입하는 유사수신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됨에도 불구하고 위 가.항과 같이 투자를 권유하여 합계 1,060,106,200원 상당을 송금받음으로써 유사수신행위를 하고,
- 다단계판매원이 되고자 하는 자에게 가입비 등 형태 여하를 불문하고 금품을 징수하는 등 의무를 부과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됨에도 불구하고, 2005. 6.경 위 같은 장소에서 피해자 공소외 10을 공소외 4 주식회사의 다단계판매원으로 등록시키면서 120만 원을 징수하여 의무를 부과하는 행위를 하고,

법제처 11 국가법령정보센터

- 2. 마약류 취급자가 아님에도,
- 가. 2005. 4. 중순경 부산 수영구 광안리 소재 광안리해수욕장 부근 노상에서 공소외 3으로부터 향정신성의약품인 메스 암페타민(이하 '필로폰'이라 한다) 약 0.3q을 30만 원에 매수하고,
- 나. 같은 해 7. 하순경 같은 장소에서 공소외 3으로부터 필로폰 약 0.3g을 30만 원에 매수하고, 다.
- 같은 해 12.20.경 공소외 3의 국민은행계좌로 필로폰 구입대금 50만 원을 계좌이체 송금한 후 같은 달 21. 23시경 서울 관악구 봉천10동 (이하 생략) 소재 대영오피스텔 702호실에서 공소외 3으로부터 필로폰 약 2g을 건네받아 이를 매수하고,
- 라. 2006. 3. 19. 공소외 3의 국민은행 계좌로 필로폰 구입대금 30만 원을 계좌이체 송금한 후 같은 달 20. 23시경 서울 서초구 반포동 소재 ◇◇모텔 3층 호실 불상 방안에서 공소외 3으로부터 필로폰 약 0.1g을 건네받아 이를 매수하고
- 마. 같은 달 21. 새벽 무렵 서울 관악구 봉천동 소재 상호불상 모텔 호실 불상 방안에서 위와 같이 매수한 필로폰 중 약 0.05g을 1회용 주사기에 넣고 생수와 희석한 후 피고인의 왼팔에 주사하여 이를 투약하고,
- 바. 같은 날 12시경 같은 장소에서 같은 방법으로 필로폰 약 0.05g을 투약하고,
- 사. 같은 달 22.경 공소외 3의 국민은행 계좌로 필로폰 구입대금 30만 원을 계좌이체 송금한 후 같은 달 23. 새벽 무렵 위 ◇◇모텔 호실 불상 방안에서 공소외 3으로부터 필로폰 약 0.1g을 건네받아 이를 매수하고,
- 아. 같은 해 7. 17.경 공소외 11에게 불상의 계좌로 필로폰 구입대금 50만 원을 무통장입금한 후 같은 달 24. 22시경 부산 해운대구 소재 해운대해수욕장 부근 노상에서 공소외 11로부터 필로폰 약 2g을 건네받아 이를 매수하고,
- 자. 공소외 1과 공모하여,
- (1) 같은 달 26. 15시경 서울 서초구 서초동 소재 상호 불상 모텔 호실 불상 방안에서 피고인이 위 1의 아.항과 같이 매수한 필로폰 중 약 0.03g을 1회용 주사기에 넣고 생수와 희석하여 공소외 1의 손등에 주사해 주고 필로폰 약 0.05g을 1회용 주사기에 넣고 생수와 희석한 뒤 피고인의 팔에 주사하여 이를 각 투약하고,
- (2) 같은 달 27. 18시경 같은 동 소재 △모텔 호실 불상 방안에서 같은 방법으로 공소외 1은 필로폰 약 0.03g, 피고인은 필로폰 약 0.05g을 각 투약하고,
- (3) 같은 달 29. 1시경 같은 장소에서 같은 방법으로 공소외 1은 필로폰 약 0.03g, 피고인은 필로폰 약 0.05g을 각 투약하고.
- (4) 같은 달 30. 15시경 같은 동 소재 □□□모텔 701호실에서 같은 방법으로 공소외 1은 필로폰 약 0.03g, 피고인은 필 로폰 약 0.05g을 각 투약하고,
- (5) 같은 달 31. 16시경 위 모텔 601호실에서 같은 방법으로 공소외 1은 필로폰 약 0.03g, 피고인은 필로폰 약 0.05g을 각 투약하고,
- 차. 2006. 8. 1. 16시경 같은 장소에서 필로폰 약 0.05g을 1회용 주사기에 넣고 생수와 희석한 후 피고인의 팔에 주사하여 이를 투약하고,
- 카. 공소외 3과 공모하여,
- 2006. 3. 23. 새벽 무렵 ◇◇모텔 호실 불상 방안에서, 피고인이 위 2의 사.항과 같이 매수한 필로폰 약 0.1g을 1회용 주사기 2개에 약 0.05g씩 넣고 생수와 희석한 다음 각자의 팔에 주사하여 이를 각 투약하고,

법제처 12 국가법령정보센터

법제처 13 국가법령정보센터